

# 대외기관과의 교류협정 체결에 관한 규정

제정 2012. 2. 1.

개정 2019. 11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포항공과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가 국내·외 대학, 기관 및 연구소 등 외부기관과의 대외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외부기관의 선정)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외부기관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해당 분야에서 수월성이 인정되며, 우리 대학의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
2. 기타 학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상호 교류협력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기관

제 3 조(발의절차) ① 대외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외부기관 개요, 협정체결 사유, 추진방안,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‘대외협정 추진 계획서’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(개정: 2019.11.1.)

1. (삭제: 2019.11.1.)

2. (삭제: 2019.11.1.)

② 대외협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, 단위부서에서는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1. 상호 학점인정,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등 학사관련 사항을 수반하는 경우
2. 예산, 공간, 기자재, 주거시설 등 대학의 각 종 행·재정상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
3. 기타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주요 정책, 장기 발전계획 등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

제 4 조(승인 등) 주관부서는 총장의 승인에 따라 협정체결을 추진하되, 협정의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 5 조(체결권자) 대외협정의 체결권자는 총장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체결권자를 단위부서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제 6 조(효력발생) 대외협정의 효력은 협정서에 쌍방의 대표가 서명함으로써 발생한다.

제 7 조(협정체결식) 대외협정 체결식은 외부기관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시행한다.

제 8 조(사후관리) ① 대외협정서의 원본은 주관부서에서 보관·관리한다.

② 대외협정을 발의한 부서는 협정체결로 인한 실적을 관리하고, 매 학년도 말 주관부서에 통지함으로써 협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